



2022 상반기

달라지는  
관세행정



# 01

##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제도 개선



### 종 전

-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발급사유(제72조제4항)
  - [제1호 ~ 제5호]
  - 수리전 정정, 귀책없는 원산지 확인서류 오류, FTA가산세면제, 사전심사 결과, 사전세액심사
  - < 추 가 >
-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운영지침
  - '경미한 과실'에 대한 발급 해석유형 규정
  - 공통·과세가격·품목분류·FTA·감면 분야별로 유형 규정
  - < 추 가 >
  - < 신 설 >

### 달라지는 내용

- 발급사유 추가
  - < 좌 동 >
  - [제6호] 일부 수입신고건의 오류
  - [제7호] 거래가격 배제사유 인식에 상당한 지식과 주의가 요구
  - [제8호] 가산요소 인식에 상당한 지식과 주의가 요구
- 운영지침 개정
  - 해석유형 추가
  - < 좌 동 >
  - **분야별 총 10개 유형 추가\***
  -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절차 신설
  - 관세조사 등 결과통지에 따라 미발급되는 경우 **수입자의 요청**이 있으면 **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개최**

### ※ 추가된 분야별 총 10개 유형

#### [공통 분야]

- 일부 기간이나 일부 품목의 세액 오류가 발생한 경우
- 거래가격 배제사유 인식에 상당한 지식과 주의가 요구
- 상급기관에 질의 등 세법해석상의 의의(疑意)로 견해대립이 심한 경우
- 감사 지적에 따라 기존 처분을 변경 또는 새로이 과세처분한 경우

#### [과세가격 분야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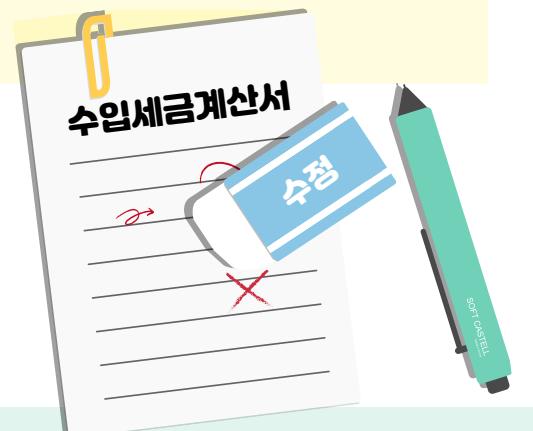
- 무상물품에 대한 통상의 주의의무
- 공제요소에 대한 통상의 주의의무
- 선행관세조사시 사실관계를 확인
- 세관장의 행정지도로 신고

#### [품목분류 분야]

- 기존유권해석 등을 검토하는 등 귀책이 없는 경우
- 유사물품의 해석례가 다양하여 결정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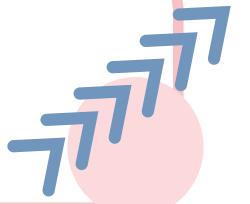
**기대효과** 납세자의 재산권 보호 및 관세행정 신뢰도 제고

**시행일** '22. 2. 7. 「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지침」 개정  
'22. 2. 15. 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 제72조제4항 개정



# 02

## 원양어선 무상공급물품의 적재절차 간소화



### 종 전

- 세관장 적재허가 대상선박
  - 국제무역선·국제무역기
  - < 신 설 >
- 세관장 적재허가 대상물품  
[외국물품인 경우 관세 미부과]
  - 선박용품·항공기용품
  - 국제무역선·국제무역기·판매물품
  - < 신 설 >

### 달라지는 내용

- 대상선박 추가
  - [좌 동]
  - **원양어선** [원양산업발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조업에 사용되는 선박]
- 대상물품 추가
  - [좌 동]
  - [좌 동]
  - **원양어선용 어로용품**  
고기잡이에 쓰이는 물품·장비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절차를 거친 물품 [예: 어업도구, 조상기 등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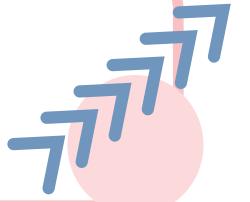
**기대효과**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**어로용품**도 국제무역선의 선박용품에 준하여 간소한 절차(세관장의 적재허가)로 공급이 가능하도록 **적재 절차 간소화**

**시행일** '22. 1. 1. 시행[「관세법」 제143조 개정]



# 03

## 보세판매장의 내국인 판매한도 폐지



### 종 전

- 내국인 보세판매장 판매한도  
·미화 5천 달러 이하

### 달라지는 내용

- 내국인 보세판매장 **판매한도 폐지**

**기대효과** 해외소비 수요의 국내소비 전환

**시행일** '22. 3월 예정 [관세법 시행규칙]제69조의3 폐지 및 「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」제3조, 제5조 및 제14조 개정



내국인 보세판매장  
**판매한도 폐지**



미화 5천 달러 이하

# 04

## 개인의 해외직구물품 반품 시 관세환급 절차 간소화



### 종 전

□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(반품)되는 경우, 관세환급 절차

-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
-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된 경우
- 세관장 확인을 받고 수출된 경우
- < 추 가 >

### 달라지는 내용

□ 대상 확대 및 절차 간소화

-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
- < 좌 동 >
- < 좌 동 >
- **소액물품\***으로 수출(반품) 후 수출 사실을 **세관장에게 사후확인\*\*** 받은 경우

\* 수출신고가격 '200만원 이하' 금액 규정은 시행규칙에서 규정

\*\* 해외운송장, 반품·환불 영수증(판매자 발행) 등 제출서류는 시행령에서 규정

**기대효과** 해외직구 이용 납세자의 관세환급 편의를 제고하고, 기존 관세청 지침으로 시행해 온 사항을 법령에 명확화

**시행일** '22. 3월 예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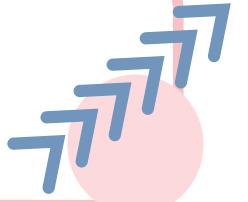
〔관세법 시행규칙〕 제58조의2 개정



수출(반품)후 세관장 **사후 확인**

# 05

## 용도세율 적용절차 개선



### 종 전

#### □ 용도세율 신청 '승인' 시 적용

- 용도세율을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신청서를 세관장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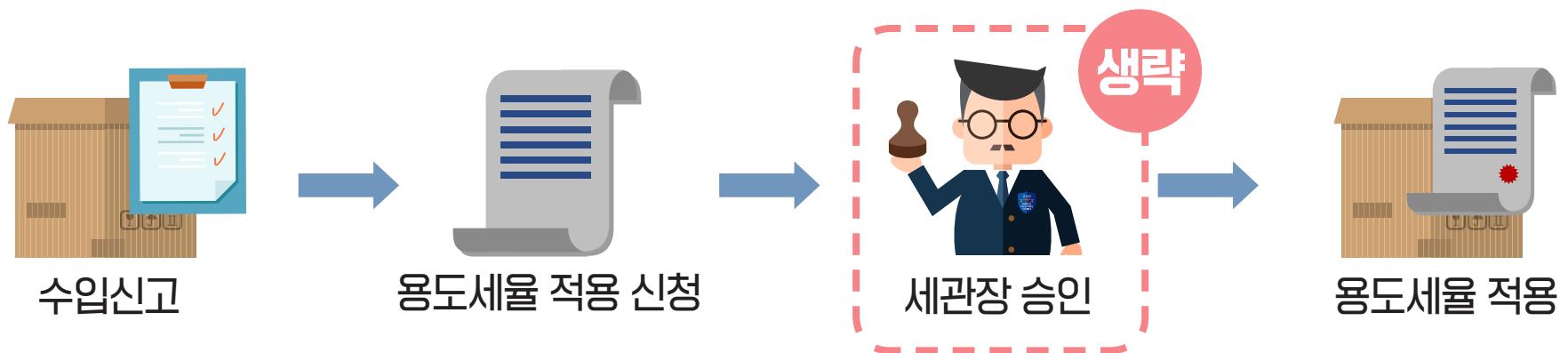
### 달라지는 내용

#### □ 용도세율 '신청서 제출' 시 적용 가능

- 세관장 '승인' 절차 없이 신청서 제출만으로 적용가능 하도록 개선

**기대효과** 신청서 제출만으로 용도세율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함으로써 납세자 편의 증진

**시행일** '22. 1. 1. 이후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〔관세법〕 제83조제1항 개정〕



### ※ 용도세율이란?

관세법상 동일한 물품이라도 그 용도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정해질 수 있는 경우, 그중 낮은 세율



## 종 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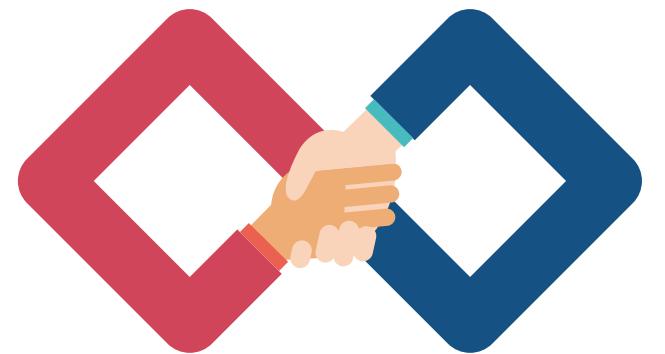
- 우리나라는 총 57개 국가와 17개의 자유무역협정 체결
-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
  - 칠레, 싱가포르, EFTA, 아세안, 인도, EU, 페루, 미국, 터키, 콜롬비아, 호주, 캐나다, 뉴질랜드, 베트남, 중국, 중미, 영국
  - <신 규>

## 달라지는 내용

- 세계 최대 Mega-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(RCEP) 발효
- <좌 동>
  - <좌 동>
  -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(RCEP)
- \* (회원국) 우리나라, 브루나이, 캄보디아, 인도네시아, 라오스, 말레이시아, 미얀마, 필리핀, 싱가포르, 태국, 베트남, 호주, 중국, 일본, 뉴질랜드



**기대효과** 주요 교역국간 통일 원산지 규정 마련, 일본과의 신규 협정 체결 등으로 수출입기업의 자유무역협정 활용 편의 제고



**시행일** '22. 2. 1. 우리나라에 대해 발효

[「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부칙]

# 07

##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 활용 시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



### 종 전

-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시  
원산지증명서 제출 필요
    -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 적용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가 수입신고 수리 후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아래의 서류 제출
      - 「관세법 시행령」 제34조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서
      - 원산지증빙서류\*
- \* 원산지증명서와 그 밖에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·정보

### 달라지는 내용

- 원산지정보가 전자적으로 교환되는 경우 **원산지증명서 제출 생략**
    - <좌 동>
    - <좌 동>
    - '전자적 원산지 정보교환 시스템'을 통해 국가간 원산지증명서의 정보가 교환\*된 경우에는 원산지증빙서류 중 원산지증명서 제출 생략
- \* 현재 중국(한-중 FTA,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) 및 인도네시아(한-아세안 FTA)에 대해 원산지정보 교환 중

**기대효과** 협정관세 적용 시  
제출 서류 간소화로 기업의 편의 제고

**시행일** '22. 1. 1. 시행

〔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〕 제9조제3항 단서 신설



전자적 원산지 정보교환 시스템



# 08

## 특수관계자의 과세자료 거짓제출 등에 대한 제재 강화



### 종 전

#### □ 특수관계 거래에 대한 자료제출

- 미제출·거짓 자료 제출시 1억 원 이하 과태료 부과
- < 신 설 >

### 달라지는 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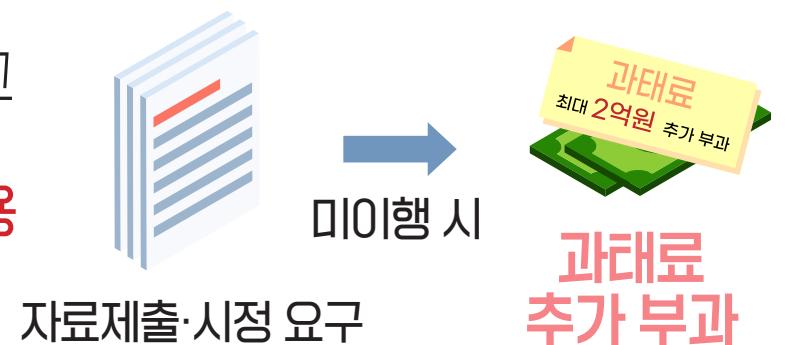
#### □ 자료제출·시정 요구 불이행에 따른 추가 과태료 부과

- < 좌 동 >
- 현행 과태료 부과 후 자료제출·시정 요구 가능(30일내 이행)
- 미이행 시 지연 기간에 따라 최대 2억 원 과태료 추가 부과\*

\* 1억 원 + 2억 원(총 최대 3억 원)

**기대효과** 특수관계자 자료제출 의무이행의 실효성 제고

**시행일** '22. 1. 1. 이후 최초 자료제출 요청 분부터 적용  
〔관세법〕제37조의4 및 제277조 개정



### ※ 특수관계자란?

판매자(수출자)가 구매자(수입자)와 본·지사 관계이거나 친인척 관계 등 밀접한 관계로 거래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자